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8월 31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8월 31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9월 9일

제1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김 석 동

나. 제안이유

-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점용료 반환 기준을 제시하고, 귀책사유 없이 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점용료 반환 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구체적인 점용료 반환 기준 제시
 - 이미 납부한 점용료 환급과 관련해 점용허가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간 점용료에 점용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후 되돌려 줄 수 있다는 규정 개정 (안 제8조제4항)

○ 점용료 반환 대상 제시

-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는 규정 신설 (안 제8조제4항제3호)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
- 기 타 : 해당 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최 명 호

○ 본 조례안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5.01.20. 시행) 에 따라 규정한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 반환 기준과 반환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8조제4항에서 구체적 반환 기준이 없었던 부분을 보완하여, 이미 납부한 점용료 환급시 환급해야 할 금액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제4항제3호에서는 귀책사유 없이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점용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점용료 반환 조항을 자체 정비하여 환급 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점용료 환급 대상을 귀책사유 없이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까지 확대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